

「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근한·김민성·이상호·이지연·장미경·허민근 의원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단순 행사성 체육대회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 기반의 문화·체육활동, 화합 행사,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 내 소통과 결속을 지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소속 공무원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 근거 신설(안 제8조제11호)
- 2) 소속 공무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·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제12호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- 2)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6. 4. 8. ~ 4. 14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직사회 내 세대 구성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증가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, 기존의 집단 중심·일회성 복지 체계를 자발적 참여와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적 수요에 맞게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단순히 체육대회로 한정되었던 지원범위를 문화·체육 활동 및 화합 행사로 확장함으로써,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소통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(안 제8조제11호)
-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, 기존에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가족 친화 정책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.(안 제8조제12호)

- 또한 조례 내 용어를 ‘소속 공무원’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대상을 명료화하였고,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능력 증진을 위한 기준 설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법적 당위성 역시 충족함.
-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기획시 특정 직급이나 연령대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할 것이며, 아울러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시 1인가구 공무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시책을 검토하여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